

춘천지방법원 2021. 9. 16 선고 2021나305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1. 9. 16 선고 2021나30508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가단51064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상민

피고, 피항소인 춘천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

변론종결 2021. 8. 26.

판결선고 2021. 9. 16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5106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① 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F 도로 253㎡에 관하여 1999. 4. 21. 접수 제16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②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F 도로 25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㎡에 관하여 2019. 4. 2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연, 판사 김현정, 판사 송종선

별지